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78
----------	------

발의연월일 : 2024. 9. 12.

발의자 : 김태선 · 이기현 · 권칠승

정준호 · 김영배 · 김태년

장철민 · 오세희 · 한민수

김준형 · 김성희 · 박 정

이용우 · 최기상 · 맹성규

이훈기 · 박군택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생태계”를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을 조사하고”로,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를 “체계·기능·복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부”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조(<u>생태계의 연구·기술개발 등</u>) ① <u>정부는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u></p> <p>② <u>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 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기후변화 등에 취약한 생태계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u></p> <p>③ · ④ (생 략)</p>	<p>제36조(<u>자연환경의 연구·기술개발 등</u>) ① <u>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환경을 조사하고-----체계·기능·복원-----</u></p> <p>-----.</p> <p>② <u>정부 및 지방자치단체-----</u></p> <p>-----.</p> <p>-----.</p> <p>-----.</p> <p>③ · ④ (현행과 같음)</p>